

한국호세코퍼의 판매약관

1.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관계자" 라는 문맥과 같이 회사, 서비스 또는 구매자를 지칭하는 그 관계적이지는 주의를 뜻한다.
- 구매자는 회사로부터 제공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업체로, 회사의 견적서나 주문 송신서에 언급된 회사 또는 개인을 말한다.
- "회사"는 경기도 부천시 정자동 74에 등록된 한국호세코 주식회사(사업자 번호 130-81-01099)를 말한다.
- "조건"이란 함은 이 약관과 회사와 구매자 사이에 별도로 서면 합의한 특별한 규정을 말한다.
- "계약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러한 조건들을 구체화 해서 회사와 구매자 사이에 맺은 계약을 말한다.
- "상품"은 이 계약이나 그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상품, 제품, 물품이나 사물(그 일부뿐이나 부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인원"은 직원, 종업원, 이사, 대리인, 컨설턴트 또는 회사, 제휴사 또는 그들의 협력사의 기타 인원을 말한다; 그리고
- "서비스"라 함은 무상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공급하거나 계약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2. 계약의 성립

- 11 회사의 영업사원은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며 주문의 접수, 확인 및 변경할 권원이 없으며 회사를 대표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 22 견적서는 예상내역이며 회사를 구속하지 않고 회사가 철회하지 않은 경우 발행일로부터 60일만 (또는 견적서에 달리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 동안) 유효하다.
- 23 구매자가 발행된 주문서는 회사가 승낙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구매자의 주문을 서면으로 승낙함으로써 구매자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구매자의 주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구매자가 그것을 통보받았다면 이 약관이 적용된다.
- 24 구매자의 주문 주둔은 회사에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25 모든 주문서는 이 약관을 적용하여 발행한다.
- 26 이 약관은 구매자가 이 약관의 내용과 일치하는 모든 거래조건을 구매자에 의해 어떠한 제3자 승낙서 또는 수정제안서 등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 27 회사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서면승인 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취소

- 구매자에 의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면으로 승인하고 회사가 서면으로 명시한 조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가격

- 41 모든 가격은 날짜가 기입된 견적서로 결정된다.
- 42 가격 변동이 없는 모든 가격은 원화로 견적하여 부가세를 제외하고 공당도 (회사가 지정한 구내내) 기준이며, 계약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구매자는 부가세 및 모든 재세 공과금과 회사의 운송, 하역, 포장 및 보험료 등에 대하여 추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43 회사는 원자재 가격의 인상, 인건비 또는 수입 원자재 등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의 변동등 고려하거나 기타 오류나 누락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 포함)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5. 지급 조건

- 51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수행한 모든 사전절차 (취득비용이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공구물 등을 준비하는 비용을 포함), 그와 관련하여 사용된 상품, 서비스 및 자재비용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구매자가 지불한다.

- 52 위 51의 조건에 따라 모든 금액은 서면으로 단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배송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된 (또는 제공되었다면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그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약할 이전에 수할할 수 있도록 지불되어야 한다.

- 53 대금 지불 일자는 지켜져야 한다.
- 54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에 따라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지불은 계약이 해제되면 그 이유를 마련하고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
- 55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에 HSBC PLC Base 대졸이자에 연 7%를 가산한 이자를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51.52 및 54항에 따라 연체되는 날부터 연체되는 기한에 따라 부과한다.

- 56 구매자는 상환하거나 지불받으려는 모든 달리 지시할 권리가 없다. 회사는 계약이나 기타 다른 계약에 따라 구매자나 구매자의 관계자 회사나 회사의 관계자에게 받아야 할 어떠한 종류의 청구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 57 회사가 구매자의 재정상태에 의문인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구매자 회사의 어떤 준비적액, 상품이나 서비스의 재고, 납품, 본분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가 대금 지급하거나 송금하여 담보물 제공받지 못한 채 구매자에게 보내야 할 것으로 보아하거나 서비스의 수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58 계약에 따라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대금지불은 현금 회화로 지불한다.

6. 해지

- 61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 또는 다른 권리나 발생한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회사는 (반대로 이전 계약 또는 약정에 불구하고) 즉시 계약상행을 중단할 수 있고, 재정의 처리, 송금과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송인원 제품의 납품을 중단할 수도 있으나 서면 통지로 구매자에게 회사의 법적 책임 없이 금액을 종료할 수 있다.
- 61.1 구매자가 만기 기일 이내에 계약 또는 구매자와 회사 또는 그 관계자 사이의 계약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때, 또는
- 61.2 구매자가 이 계약에 따른 그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복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
- 61.3 구매자가 이행할 수 없도록 불구하고 중대한 의무 위반을 행했다가, 이를 해결지 못하여 서면 상에 구제 또는 중단을 요구한 30일 이후 계속될 때; 또는
- 61.4 구매자가 그 채무 (일급이나 이자)에 대한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겠다고 위협하거나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 61.5 구매자가 당사자와 고객과 관련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예고하고 계획을 제시하거나 민원서를 제출하거나 요청이 될 (자발적 재건 또는 합병의 목적으로 지를 가능하도록) 후;
- 61.6 구매자가 그들 자신의 일부 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임명하거나, 임명하는 신청서를 갖거나, 예고할 경우; 또는
- 61.7 구매자가 그 자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를 두거나 행정관리를 임명한 경우 또는 어느 사람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관권이 있거나 행정관리를 인 된 경우
- 61.8 구매자가 그 자발적 청산을 제안하는 것과 관련한 단계에 진입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자발적 청산의 통고되거나 그 자신의 부채상환 일정의 조정과 관련하여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산의 시한을 정한 경우
- 61.9 구매자가 그 담보권자가 담보된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달리 그와 담보권을 행사하게 하는 때
- 61.10 구매자가 자산에 대해서 어떤 강제집행, 압류, 가압류 등이 실행된 때
- 61.11 회사가 구매자의 재정상태가 손상되었다고 인정할 때
- 61.12 구매자가 61항의 어떤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향이 있는 사법적 사건을 진행시키거나 발행하거나 고집하는 때

7. 인도와 이행

- 71 계약서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상품은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의) 공당도로 출하되고 구매자는 상품이 준비되었을 통보된 이후 14일 이내에 판매자의 장소에서 상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 72 만일 계약서에 Incoterms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운송을 진행하거나 운송을 Incoterms 2010에 적용되며, 이러한 조건과 인도한 내용 사이에 모호함이 있는 경우 그 인도조건에 따른다.
- 73 위험부담은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 이전된다 (인도가 서비스의 시작이나 완료 전에 이루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74 회사는 구매자에게 모든 통보를 할 의무는 없다.
- 75 회사가 상품을 인도하기로 정한 일정은 예상 배송 일정이며, 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76 회사는 기일 내 상품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구매자의 손실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이든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77 회사는 분할하여 납품하고 각 분할납품 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 78 분할하여 납품하는 경우 또는 회사가 77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품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또는 어떠한 이유의 서면 통보 불응하는 부분의 납품지연에 대하여 구매자는 이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제재를 취하지 못한다.
- 79 계약서에 기술된 상품과 납품 수량상의 차이에 대하여 구매자는 상품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며 구매자는 인수후 그 계약한 대로 따라 인도한 수량의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80 만일 인입할 수 있도록 준비된 어떤 상품에 대한 인수를 거절하거나 구매자가 필요한 지시, 서류, 서류 또는 송금을 제공하지 않아서 회사가 지정한 시간에 인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인도되고 위험부담은 회사의 부주의에 의한 손실이나 망실을 포함하여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통보할 수 있다:
 - (a) 그 상품들 중 인도할 때까지 저장되며 그러한 경우 구매자는 (유해한 보관료와 보험료 포함) 모든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 (b) 저본 가능한 것과 가격에 제물을 저본할 수 있으며 (모든 합리적인 보관료 판매 비용을 공제 후) 계약 가격보다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금액과 예게 부과할 수 있다.

8. 소유권

- 81 제품들에 대한 모든 법적, 소유권은 지물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에게 있다:

- 8.12 회사가 공급한 다른 상품
- 8.13 구매자가 회사 계약에 지불하게 되는 기타의 금전
- 8.14 구매자 회사의 관계자에게 지불하게 되는 기타의 금전
- 8.2 상품을 81항에 따라 상품의 발행적, 수익적, 지분의 소유권과 재산권이 구매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기까지
 - 8.2.1 구매자는 회사의 수익자와 같이 상품에 대한 수익의 의무를 가진다
 - 8.2.2 구매자는 상품을 적절히 보호 및 유지하는 상태 하에 보관해야 한다.
 - 8.2.3 구매자는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기 전에 상품 상태를 적절히 관리한다.
 - 8.2.4 구매자는 상품이 표시나 포장의 변경하지 않는다.
 - 8.2.5 구매자는 상품을 별도로 회사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 8.2.6 회사는 구매자에게 달리 통보하고 있는 조건에 있는 상품을 업무시간 중에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다. 권리를 갖는다.
- 8.3 8.1&8.1항과 8.2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구매자에게 달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한 구매자는 원칙적으로 일상적인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그러한 상품을 선의에 의하여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하거나 일상적인 업무에서 그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
- 8.3.2 상품은 구매자에게 인도된 순서에 따라 사용하거나 판매된 것을 간주한다.
- 8.3.3 구매자에게 재산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품을 구매자가 판매한 것은 (회사와 구매자 사이에) 구매자 회사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한 것이며 구매자는 그 판매대금을 받어서 상품의 구매대금 전액으로 그 금액이 지불되거나 이미 지불된 금액을 제외하고 회사에 송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지급되기 이전에는 회사의 수익자와 대리인에게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8.4 상품의 소유자가 구매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회사에 모든 지분이 되있는) 업체 또는 구매자 회사에 의무 위반이든 아니든) 회사는 (권리에 대한 다른 어떤 것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8.4.1 일부 또는 전체 상품을 보유중인 구매자는 회사가 필수 목적으로 구매자의 장소의 진입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
 - 8.4.2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즉각적인 인도를 요구한다.
 - 8.4.3 구매자가 지불받으려 처하거나 자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법정관리나 행정관리, 파산관리에 들어가거나 재정부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기타 자산에 대하여 일괄나 강제집행에 들어가거나 구매자에게 다른 통지하여 구매자의 권한이 자동적으로 (총 보) 종료되는 것을 통보하여 구매자가 상품을 재판매 할 수 있는 구매자의 권한을 즉시 서면 시킨다.

- 8.5 구매자의 계산방식에 관계없이 회사는 회사의 의도대로 처리할 수 있다.

- 8.6 항목의 각 항목은 개별적으로 별도 적용되며, 어느 항목이 어떠한 사유로 그 조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항은 유효하다.
- 8.7 회사에 준하여나 취할 모든 설계, 제도, 견본, 공구, 용품 기타 장비들은 (그리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에 별도로 지정된) 구매자의 부패 및 권고에 전적으로 구매자의 재산이다.
- 8.8 구매자는 위에 정의된 것과 같이 구매 발생된 때 제품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유지해야 한다. 제품이 회사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동안 인상이 파기나 불량한 경우에 대하여는 모든 대금을 받거나 즉시 회사에 송금하며 그 회사에 반환 수 수익자와 에이전트로서 송금되기 까지 같은 금액을 유지해야만 한다.

9. 서비스의 공급

- 91 회사는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92 회사는 서비스의 수행방식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일자는 예상이며 그 기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어떠한 사유에서 발생한 인도가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 93 회사가 서비스를 거래자에게 수행하는 경우에 구매자는
 - (a)관련된 시간에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장소에 접근하는데 안전 및 제책 방지 않도록 조치하고;
 - (b)제공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모든 필요한 동의, 허가 또는 필요한 면허 등을 준비한다.
 - (c)제공할 전력, 조명, 난방, 급수, 압축공기, 스팀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설비나 용품의 공급을 보장하여야;
 - (d)서비스가 제공되는 적절한 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재창고와 동결, 풀, 기타 물리적으로 자연조건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접근할 수 있는 관련된 장비의 제공을 해야;
 - (e)서비스는 공급하기에 충분한 작업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 (f)상품 또는 관련된 서비스의 하역 등을 위하여 근거리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 또는 리프트 등 필요한 장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 (g)서비스를 위한 자재나 장비에 대한 다른, 손실, 손상을 위해 적절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며;
 - (h)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가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절하고 청결하며 작업자에게 건강과 환경상의 위험 없이 합일과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배에 달리 장비물 보유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 (i)회사가 그 관계자의 부주의에 따른 한 사람이나 부상을 제외하고 구매자의 장소에서 발생한 회사 인원이 사망이나 부상을 또는 화상 또는 그 관계자, 청결업자와 인원의 지분의 손실이나 본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j)서비스가 설비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이 포함될 경우 회사의 설비의 제거되거나 할 부분이나 남겨야 하며 통보하거나 지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거작업은 안전 신술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그러한 제거작업이나 통로로 인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발생한 분실이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따라서 모든 손실에 대하여 제외된다.)

- 9.4 회사는 서비스가 수행되는 장소에서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나 기계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9.5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에 원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에 관련된 계약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 (a)회사가 구매자에게 그 완료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할 때
- (b)구매자 서비스 수행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서비스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i) 구매자에게서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경우(구매자의 시합소나 부패이 부족한 경우)
 - (ii)구매자 서비스 제공장소가 준비하여야 할 사람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사용해야 하는 설비나 서비스의 상태
- (c)구매자의 계약 위반

10. 회사의 자료

- 10.1 회사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한 자료의 경우 (유로 또는 무료로, 상품 혹은 서비스는 준비, 저장, 운반, 설치, 사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허가를 받은 것이 포함하여), 그러한 자료는 회사의 재산이다.
- 10.2 구매자는 회사의 자료를 잘 보존하여 안전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단지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지의 권고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10.3 회사의 과실, 그 관계자 또는 하청 업체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권리와 이익을 갖는 동안 구매자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이 인으로 모든 손실, 손해, 손해, 비용 및 청구에 대하여 그 관계자에게 배상한다.
- 10.4 구매자는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회사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환한다. 이를 명확화 하기 위하여, 구매자는 회사의 자료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회사는 회사의 자료를 언제든지 사전 통보 없이 회수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회사에게 어떠한 장소도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회사를 대신한 대리인도 동일)
- 10.5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계약이나 그 일부분의 종료 시 구매자는 모든 회사의 자료를 반환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그와 관련된 다른 보상 없이 구매자의 장소에 진입하여 그것을 회수한다. 회사자료가 반환되거나 전달되기 까지 구매자는 안전하고 보관하고 계약과 관련된되지 않은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11. 검사 및 부속

- 11.1 구매자는 상품을 제외하고 구매자는 상품을 계약과 관련하여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a)구매자 상품이 배달되거나 수행한 후 기일이 경과하기 (상품이나 사용이나 변경 전에) 구매자가 회사로 서면으로 검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함이 잘못된 부분을 통보한 경우 (이것은 기일 이내에 상품을 검사하고 검사와 그 시험에 대한 것이임)
 - (i) 구매자가 기일 내에 결함된 부분이 배달되거나 수행한 후 7일 이내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구매자가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상품의 결함이 잘못된 부분을 통보하는 경우, 그것을 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그 상품의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며, 그것은 그러한 결함이나 문제가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고쳐진 상품이 계약에 따라 배송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격에 대하여 지불의 의무가 있다.
 - 12.1 결함이나 재고부족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그 인하여 사용하거나 그로 인한 어떠한 변경이나 수하기 전에 그 상품에 회사에 여가 있는 즉시 조사할 것임(구매자의 비용으로 상품이 반환되는 것을 포함하여) 같은일 회사는 그러한 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ii) 회사는 구매자가 정적 검사와 배상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회사의 결사에 의지할 필요없이) 배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 11.3 만일 기간이 회사에 113항에 따라 통보하면 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것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보한 후 7일.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부과된 송금에 대한 계약내용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 12. 보증
 - 12.1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된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테이스트 등에서 회사가 알려진 유효기간 이내에 기한 결함이나 재해 결함 또는 회사측에서 숙련이나 오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함이나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자체 결함 또는 제조 결함 수 있지 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결함과 결점이 상품이나 그 부를 또는 서비스나 그 일부를 다시 제공하거나 서비스나 상품의 해당부분에 대한 가격을 반환한다.
 - 회사는 구매자에게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그 기일이 6개월 이남가 될 것인지 여부를 통보한다.

- 12.2 12항에 속한 회사의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121항의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 수행한 121항에 따른 회사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 한다.

- 12.3 회사는 12.2항에 대하여 구매자가 다음과 같이 그 의무를 제외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 12.3.1 결함을 발견하거나 발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러한 결함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
 - 12.3.2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발행된 장소에서 회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면 회사에 조사, 검사 및 시험을 위해서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결함이나 서비스의 관련된 자료를 14일 이내에 회사에 귀속하여 회사를 고집되어야 할 결함이 있는 재제나 인도에 수행된 서비스와 관련된 재료를 회사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2.4 만일 12.3항에 따라 상품을 교환하거나 서비스를 다시 수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자기 비용으로 결함제품이 배출된 위치나 결함 있는 서비스의 제공된 장소로 교환품을 배출하거나 서비스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교환된 결함 있는 교환된 소유권과 다른 회사에 귀속되어 구매자는 고집되어야 할 결함이 있는 재제나 인도에 수행된 서비스와 관련된 재료를 회사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2.5 회사는 다음의 경우 121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
 - 12.5.1. 마도, 고고적인 고소, 태만 비합리적인 정장이나 적정담당, 회사의 구두 또는 서면지시의 위반, 오역이나 변경, 회사의 승인 없이 수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발생한 결함
 - 12.5.2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효율적 지적되지 않은 경우
 - 12.5.3 제조사나 회사에 제공된 담보나 보증서에서 제외되거나 귀속되는 사항과 회사가 그 생산자에게 사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 태만하여서는 회사가 생산하지 않은 부품, 재료, 혹은 설비
 - 12.5.4 구매자가 제공한 도면, 설계, 사양, 시험서, 지시서 또는 다른 문서나 추천사항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인 경우 그와 관련하여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
 - 12.5.5 공급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구매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발생하는 경우, 만일 그러한 결함이 제공 되었더라면 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없도록 서지 하도록 경우
 - 12.6 비 조건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 규정이나 규정에 따라 목적인 모든 조건, 보조, 봉합이나 기타 조건들을 빌려서 허용하는 한 내에서 사용한다.
 - 12.7 회사는 법규나 안전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13. 책임의 한도

- 13.1 회사는 법률적으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과실이나 사기 허위선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 등에 대하여 그 항목을 제외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 13.2 구매자는 11, 12, 13조의 조건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계약의무 위반, 허위선술, 설명, 부당행위나 태만, 배상, 계약 또는 그의 이행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적 의무나 기타 의무의 다른 모든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일 제3인이 부패, 충동, 태만, 폭력, 기만, 부패, 횡포, 중상, 부패, 부정, 배상, 계약상행, 정부의 조치나 규정, 또는 급급자, 사도, 원자재의 재고부족, 작업인원이나 생산성비의 급증이므로부터 발생하는 지인)
- 13.3 회사는 계약에 따라 계약이반에 대한 모든 객관적이고 통상 합리적인 예측 가능한 손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회사는 불통하거나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3.4 회사는 발생한 모든 손해, 폐회적 또는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에 상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13.5 회사가 조건 14는 12항의 계약상 배상비용(인외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 또는 물품 또는 분할을 인도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구매자에 대해 책임질 때는 경우, 회사의 책임은 아직 인도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사한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비용(가장 저렴한 시장 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 13.6 조 13.1-13.5(포함)에 따라, 과실, 계약 위반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이행 또는 그러한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총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것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다.
- 14. 불가항력
 - 14.1 회사가 외부의 불가항력인 상황으로 인하여 상품의 인도를 하지 못하거나 지연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하는 계약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천재지변, 전쟁, 폭동, 태만, 폭력, 기만, 부패, 횡포, 중상, 부패, 부정, 계약상행, 정부의 조치나 규정, 또는 급급자, 사도, 원자재의 재고부족, 작업인원이나 생산성비의 급증이므로부터 발생하는 지인)
 - 14.2 회사는 위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인도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발견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4.3 만일 인도가 없는 한 합일이 구매자가 회의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3개월이상 경과된다면 어느 발발은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4.4 만일 그 계약이 취소되면 회사는 구매자가 이미 지불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회사가 구매자로부터 51항의 조건인 회사나 다른 주문을 충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여 구매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 그러나 회사는 그 구매자에게 하청물 추가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손해배상

- 구매자는 회사나 그 관계자에게 다음 사항에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회사나 그 관계자에게 인한 모든 영항, 손실, 손해, 부상, 대기(법률적 대가 포함), 클레임 및 비용에 대하여 회사와 관계자에게 배상하거나 합의한다.
- 15.1 회사가 명적 또는 묵시적으로 구매자의 지시사항을 따르므로써 발생하게 되는 어떠한 허위권, 등록된 위장권, 저작권, 상표권이나 기타의 산업, 지적재산권과 침해 또는 그와 관련된
- 15.2 회사가 구매자를 위하여 제공한 제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구매자에게 지정한 설계, 도면 또는 사양서 15.3 구매자가 회사에 제공하거나 회사가 구매자를 위하여 제공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불법자료나 제품 15.4 구매자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 분쟁, 소송, 처리, 지연, 손해, 비용 및 청구
- 15.5 구매자가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계약, 어떠한 표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나, 부주의와 과실을 포함한 것
- 15.6 구매자나 그 관계자 중립업 또는 계약의 서약이나 종료와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회사나 그 관계자에게 인한 고용계약 또는 서비스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용관계에 인정을 할 요구하는 사람 일기없이 고용계약의 해지
- 15.7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회사나 그 관계자의 중립업과의 고용관계의 해지

16. 판적정보

- 회사가 개발도, 기술자료, 가격목록과 어떠한 제제를 통하여 제공하는 기타의 정보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문을 하지않고, 그러한 출판물이야 정보들은 구매자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것이 회사가 어떤 것을 표시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어떤 그 내용이 구매자에게 정확히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17. 통지

- 17.1 이하에서 통지는 서면으로 한다. 인편이나 요급을 선한일 일반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전송할 수 있다. 다음

- 만일 어떠한 상대방의 주소지나 그 상대방이 수취지 서면으로 통보하는 주소로 발송되거나 배달되지 못할것인 것으로 판명되면, 만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발송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팩시밀리로 보내는 경우 수신했다고 하는 때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8. 양도

- 구매자는 계약 또는 계약목적 다른 이익을 회사의 사전 서면통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양도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계약의 이익은 회사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된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도 양도한 것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언제든지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을 주거나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탁한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19. 준거법률

- 계약과 이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 분쟁 또는 청하는 (그것이 계약 사항이거나 불법행위, 법규의 위반 또는 기타의 계약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된다.

20. 재판의 관할

-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가 주소하는 대한민국의 일반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고,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유일한 신학, 본점이나 청구된 모든 국제상업법원의 관할권에 따라 선정된 한 명 또는 수 명의 중재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그러한 중재는 대한민국 서에서 한여로 한다. 만일 회기가 중재자에게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는데 구매자가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면, 중재자가 회사가 이 약관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실상 소송을 취하하여 오히려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한 그러한 소송은 중단된다.

21. 제독

- 이 조항들의 제독은 편의의 한 것으로 해석상에 영항을 주지 않는다.

22. 건강 및 안전

- 구매자는 상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사전 건강에 해롭지 않고 안전하는 것을 확인하기에 필요한 설계, 시험 및 기타 필요한 조건들에 관련된 정장나 승인된 정보와 작업자에 의해서 설정, 사용, 정리되거나 유지될 때 또는 그것들이 폐기되거나 재활 될 때 항상 안전하도록 (그것은 적절한 장비가 제공되고 위치하고 이해야 된다는 것임)이다. 재제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에 따라, 조차할 필요가 그이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수준에 안전하고 위해 인입물과 같이 위험한 것에서 해롭지 않게 하여야 하며, 그 관찰자나 상품의 다음 급급자에게 인입하여 이 조건에 대한 모든 조사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구매자는 인도하기 전에 상품을 시험하고 검사할 수는 합리적인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23. 일반사항

- 23.1 회사의 구매자 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경우나 그 관계자의 권리는 회사나 구매자에게 그 관계자가 계약에 대한 통지사항을 사전한 통지부터 유효하다.
- 23.2 회사와 구매자 계약의 종료, 폐지, 및 수정이후에 합의하거나 기타 또는 계약서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 당사자 이외의 어떤 사람이 동의하여 하는 대상이 아니다.
- 23.2 계약서는 구매자와 회사간에 상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모두 통용하여

약정하는 것이며 이전에 회사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의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발행했던 모든 문서들을 대체한다. 구매자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와 다르게 회사가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구매자에게 제공된 어떠한

보증서, 성명서, 약정이나 표현이 없었으며 또 그러한 것을 믿고 전체적이든 부분적이든 계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다. 구매자는 어떠한 보증서나, 성명서, 약정이나 표현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구매자의

권리나 배상권은 이해되지 않으며, 청구권, 권리 또는 취소된 계약에 관한 배상 등에 관한 권리들을 회복시킬 수 없으며 아무런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합의한다